

2023. 2

# 정 관

재단법인 북면초등학교장학재단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장학사업·인재의양성과 학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나아가 첨단학습시설·교육시설·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북면초등학교 장학재단”(이하, ‘법인’이라 칭함.)이라 한다. 영문으로 BUKMYEN ELEMENTARY SCHOOL SCHOLARSHIP FOUNDATION 한문으로 “財團法人 北面初等學校獎學財團”이라 각 표기 한다.

**제3조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한교리 68-3번지(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562번지)에 두고, 필요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현장학습 지원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본자산 및 보통자산의 예탁사업
2. 회원 회비 등 기탁금 모금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 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적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 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의 평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에 의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기타의 수입 및 아래 각호의 기금으로 조달한다.

1. 각종 기부금.
2. 본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기부금.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 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에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16 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 제 3 장 임 원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기인총회에서 호선 후 최종 선출된 이사는 총15인 이내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법률규정 내에서 그 정수를 가감할 수 있다.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후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추천으로 총회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에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25조 【고문위원】** ① 법인은 업무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의 중요한 안건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고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위원은 이사회에의 결의를 거쳐 위촉 한다.

## 제 4 장 총 회

**제26조 【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7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0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5 장 이 사 회

**제3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3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4조 【회기】** 이사회는 분기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5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8조 【사무국 설치】** ① 이사회 하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위 사무국은 이사회장을 보좌하여 제4조에 규정된 제반업무와 실무를 집행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실무관 등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기로 한다.

## 제 6 장 보 칙

**제39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 승인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해산】** 이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북도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라북도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신문(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3.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4조 【설립당시의 임원 및 각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임기
이사 겸 이사장	박근수	*****	정읍시 *****	2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임기
이사	유갑규	*****	정읍시 *****	2
이사	김재문	*****	정읍시 *****	2
이사	김문근	*****	정읍시 *****	2
이사	문종열	*****	정읍시 *****	2
이사	유영호	*****	정읍시 *****	2
이사	김석현	*****	정읍시 *****	2
이사	이병태	*****	정읍시 *****	4
이사	정공수	*****	정읍시 *****	4
이사	김종진	*****	정읍시 *****	4
이사	김성국	*****	정읍시 *****	4
이사	권영근	*****	천안시 *****	4
이사	김성현	*****	정읍시 *****	4
감사	이영천	*****	정읍시 *****	1
감사	김애란	*****	정읍시 ***** *****	2

부칙. [제1호. 2023 . . .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발기인 명부 및 서명날인】

2023년 월 일

**설립발기인 명부 및 서명날인**

구분	성명	날인
발기인대표	김문근	
발기인	박근수	
발기인	유갑규	
발기인	김재문	
발기인	문종열	
발기인	유영호	
발기인	김석현	
발기인	이영천	
발기인	이병태	
발기인	정공수	
발기인	김종진	
발기인	김성국	
발기인	권영근	
발기인	김성현	
발기인	김애란	

별지 1)

##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 2023 년 2월 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 산 (현 금:통장잔고)	1 계좌	160,000,000	정기예탁
동 산 (현 금:통장잔고)	1 계좌	110,000,000	정기예탁
동 산 (현 금:통장잔고)	1 계좌	30,000,000	정기예탁
합 계	3 계좌	300,000,000	

###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 산 (현 금:통장잔고)	1 계좌	160,000,000	정기예탁
동 산 (현 금:통장잔고)	1 계좌	110,000,000	정기예탁
동 산 (현 금:통장잔고)	1 계좌	30,000,000	정기예탁
합 계	3 계좌	300,000,000	

(별지2)

##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 산(현 금:통장잔고)	1 계좌	160,000,000	정기예탁
동 산(현 금:통장잔고)	1 계좌	110,000,000	정기예탁
동 산(현 금:통장잔고)	1 계좌	30,000,000	정기예탁
합 계	1 계좌	300,000,000	

###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 산(현 금:통장잔고)	1 계좌	160,000,000	정기예탁
동 산(현 금:통장잔고)	1 계좌	110,000,000	정기예탁
동 산(현 금:통장잔고)	1 계좌	30,000,000	정기예탁
합 계	1 계좌	300,000,000	

## 재 산 총 괄 표

재 산 구 분		수 량	금액(가액)	설립년도수입액	취득원인	비고
기 본 재 산	현 금	3계좌	300,000,000	2023.	기탁금	예치금
	<b>【동산 소계】</b>		300,000,000			
	건 물	m <sup>2</sup>				
	전(田)	m <sup>2</sup>				
	답(畓)	m <sup>2</sup>				
	기타					
	<b>【부동산 소계】</b>					
	기 타					
	<b>【합 계】</b>	3계좌	300,000,000	2023.	기탁금	예치금
보 통 재 산	현 금	1계좌	5,844,972	2023.	이자수입	예치금
	<b>【합 계】</b>	1계좌	5,844,972		이자수입	예치금
<b>【총 계】</b>		4계좌	305,844,972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작성자 : 재단법인 북면초등학교장학재단법인 대표이사 박근수 (날인 또는 서명)

기 본 재 산 목 록 (2023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량(평)	금액(가액)	비 고
현금	3 계좌	300,000,000	정기예금
<b>【동산 소계】</b>			
건물	m <sup>2</sup>		
전(田)	m <sup>2</sup>		
답(畓)	m <sup>2</sup>		
임야(林野)	m <sup>2</sup>		
기타	m <sup>2</sup>		
<b>【부동산 소계】</b>	m <sup>2</sup>		
기타			
<b>【합 계】</b>	3 계좌	300,000,000	정기예금

작성일자 : 재단법인 북면초등학교장학재단법인 대표이사 박근수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⑫ - 보통(운영)재산목록 】

보통(운영)재산목록 (2023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량(坪)	금액(가액)	비 고
예탁금	1계좌	5,844,972	예치금
계	1계좌	5,844,972	

작성일자 : 재단법인 북면초등학교장학재단법인 대표이사 박근수 (날인 또는 서명)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금액단위 : 천원)

회원구분	인 원	연회비	회 비 수 입			비고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회비	100명	60	6,000	6,000	6,000	
임원회비	15명	120	1,800	1,800	1,800	
합 계	115명		7,800	7,800	7,800	

※ 연도별 회비징수 징수계획--- 회원별 자동이체 유도

- 1차년도(2023년) : 7,800천원
  - 회원회비 : 년 60,000원 × 100명 = 6,000천원
  - 임원회비 : 년 120,000원 × 15명 = 1,800천원
  
- 2차년도(2024년) : 7,800천원
  - 회원회비 : 년 60,000원 × 100명 = 6,000천원
  - 임원회비 : 년 120,000원 × 15명 = 1,800천원
  
- 3차년도(2025년) : 7,800천원
  - 회원회비 : 년 60,000원 × 100명 = 6,000천원
  - 임원회비 : 년 120,000원 × 15명 = 1,800천원

작성자 : 재단법인 북면초등학교장학재단 대표이사 박근수 (날인 또는 서명)

(제1차년도)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 2023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구	분	금
		액			액
①회 비	회원회비	6,000	①경상비	인 건 비	
	임원회비	1,800		운 영 비	2,000
				재단설립비용 등	3,000
	소 계	7,800		소 계	5,000
②출연금	기본재산	300,000	②퇴직 적립금		
	보통재산	5,844	③법인세		
	소 계	305,844	④목적 사업비	※ 사업계획별로 작성	
③과실소득		1. 장학금지원		4,600	
④수익사업	부동산			2. 진로체험학습 지원	7,400
	임대수입		소 계	12,000	
	이자수입	4,000	⑤기본재산 편입액		
	※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 사업계획서등 별도 작성 필요		300,000		
	소 계	4,000	⑥차기 이월액	목적사업	전 기
⑤전기 이월액				준비금	당 기
				이월잉여금	644
	소 계		소 계	644	
⑥법인세 환급액					
합 계		317,644	합 계		317,644

작성자 : 재단법인 북면초등학교장학재단법인 대표이사 박근수 (날인 또는 서명)

(2차년도)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 2024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회 비	회원회비	6,000	①경상비	인 건 비 (세부내역필요)		
	임원회비	1,800		운 영 비 (세부내역필요)		3,000
	소 계	7,800		소 계		3,000
② 출연금	기본재산	300,000	②퇴직 적립금			
	보통재산		③법인세			
	소 계	300,000	④목적 사업비	※ 사업계획서별로 작성		
③ 과실 소득		1. 장학금지원				4,600
				2. 진로체험학습 지원		
④ 수 익 사 업	예금이자	10,000	소 계		13,480	
			⑤기본재산 편입액			
	소 계	10,000			300,000	
⑤ 전 기 이월액	이월금	644	⑥차기 이월액	목적 사업 준비금	전 기	
					당 기	
	소 계	644		이월잉여금		1,964
			소 계		1,964	
⑥법인세 환급액						
합 계		318,444	합 계		318,444	

작성자 : 재단법인 북면초등학교장학재단법인 대표이사 박근수 (날인 또는 서명)

### (3차년도)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 2025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회 비	회원회비	6,000	①경상비	인 건 비 (세부내역필요)		
	임원회비	1,800		운 영 비 (세부내역필요)		3,000
	소 계	7,800		소 계		3,000
② 출연금	기본재산	300,000	②퇴직 적립금			
	보통재산		③법인세			
	소 계	300,000	④목적 사업비	※ 사업계획서별로 작성		
③ 과실 소득		1. 장학금지원			4,600	
		2. 진로체험학습 지원			11,100	
④ 수 익 사 업	예금이자	10,000	소 계		15,700	
			⑤기본재산 편입액			300,000
	소 계	10,000	⑥차기 이월액	목적 사업 준비금	전 기	
⑤ 전 기 이월액	이월금	1,964		이월잉여금	당 기	
	소 계	1,964		소 계		1,064
⑥법인세 환급액						
<b>합 계</b>		<b>319,764</b>	<b>합 계</b>			<b>319,764</b>

작성자 : 재단법인 북면초등학교장학재단법인 대표이사 박근수 (날인 또는 서명)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한교리 68-3번지(정읍북로 562번지)
2. 소유자(전대자) : 사거리마을회 대표 이병태
3. 사용면적 : 20㎡ (151.8㎡중)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법인 북면초등학교장학재단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가. 사용기간 : 2023. 04. 1일 ~ 2028. 03. 31일
- 나. 사용조건 : 년 30만원

2023년 3월 일

소유자(전대자) : 사거리마을회 대표 이병태 (인)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 타인 소유의 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무상 사용의 경우 소유자(전대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한정사유서

본 북면초등학교장학재단은 장학재단의 수혜범위를 북면초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한정시킨 사유는 모교졸업생들이 북면초등학교를 위해 자금을 조성해 왔고 어려운 생활여건에도 불구하고 향학열기 가득한 우수자(재학생, 졸업생)를 선발 장학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마음 놓고 면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긍지와 사기를 높여주어 모교의 발전과 국가 및 지역사회에 자랑스런 역군이 되도록 하기 위함임

2023년 3 월 일

재단법인 북면초등학교장학재단 대표이사 박근수 (인)

부칙. [제1호. 2023 . .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발기인 명부 및 서명날인】

2023년 2월 00일.

재 산 총 괄 표

재 산 구 분		수 량	금액(가액)	설립년도수입액	취득원인	비고
기 본 재 산	현 금	3계좌	300,000,000	2021.	기존장학금및 기탁금	예치금
	【동산 소계】		300,000,000			
	건 물	m <sup>2</sup>				
	전(田)	m <sup>2</sup>				
	답(畓)	m <sup>2</sup>				
	【부동산 소계】					
	기 타					
【합 계】	3계좌		300,000,000	2021.	기존장학금및 기탁금	예치금
보통 재산	현 금	1계좌	5,678,590	2022.	이자수입	예치금
	【합 계】	1계좌	5,678,590		이자수입	예치금
【총 계】		4계좌	305,678,590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 2023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회 비	회비	6,000	① 경상비	인 건 비 (세부내역필요)		
	임원특별회비	7,000		운 영 비 (세부내역필요)	5,000	
	소 계	13,000		소 계	5,000	
② 출연금	기본재산		②퇴직 적립금			
	보통재산	5,000	③법인세			
	소 계	5,000	④목적 사업비	※ 사업계획서별로 작성		
③ 과실 소득		1. 장학금지원		4,600		
		2. 진로체험학습		5,400		
④ 수익 사 업		소 계	10,000			
⑤ 전기 이월액	소 계	3,000	⑤기본재산 편입액			
			⑥차기 이월액	목적 사업 준비금	전 기	
				이월잉여금	당 기	
소 계	3,000	소 계	3,000			
⑥법인세 환급액						
합 계		18,000	합 계		18,000	